

이화젠더법학 편집 및 간행 규정

제정 2010. 1. 30.
개정 2012. 6. 1.
개정 2012. 12. 19.
개정 2014. 12. 15.
개정 2015. 5. 14.
개정 2016. 1. 26.
개정 2016. 9. 9.
개정 2017. 1. 10.
개정 2017. 12. 26.
개정 2019. 12. 28.
개정 2020. 5. 27.
개정 2020. 8. 28.
개정 2025. 3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(이하에서는 “연구소”라 한다)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호) 학술지의 제호는 『이화젠더법학(이하 “학술지”라 한다)』이라 한다.

제3조(발행) ① 학술지의 발간은 년 3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발간일은 매년 5월 31일, 8월 31일, 12월 31일로 한다. <개정 2012. 6. 1., 2015. 5. 14., 2017.1.10., 2020.5.27>

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간행할 수 있다.

제4조(발행형식) ① 학술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술지는 제1항의 형식 외에 전자출판, 인터넷출판, CD나 D-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출판의 형식으로 간행될 수 있다.

제5조(원고투고자격) ① 학술지에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2. 변호사 자격 소지자

3.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
4. 기타 편집위원회가 젠더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

②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 및 편집위원 1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4.]

제6조(제재논문)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2. 15.>

1. 연구논문: 문헌자료, 경험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

2. 판례평석: 젠더법학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

3. 연구단편: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연구주제를 소개 혹은 제안하는 논문, 현지조사결과를 기술적으로 보고하는 연구보고서,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리뷰논문

4. 서평: 최근 3년간 발행된 젠더법학 관련 단행본, 간행물, 논문에 대한 서평

5. 번역: 젠더법학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외국문헌에 대한 번역

6. 기타 연구활동, 학술정보 등

②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젠더법학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

2.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

3.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

제7조(저작권) ① 학술지의 편자는 연구소 명의로 한다. 다만, 논집의 내용에는 개별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.

② 연구소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저작권 양도 동의 서명에 따라 학술지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, 이익,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며, 2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에는 제1저자가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학술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·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.

④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논문의 내용에 대한 특허출원, 상표 설정등록, 디자인권 설정등록, 연구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

2. 교육이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논문 전문 또는 일부를 복제 및 인쇄하고 배포할 권리

3. 저자에 의한 강의,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, 교과서 등 서적과 논문의 기술을 위하여 논문의 전문 또는 일부를 사용할 권리

⑤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는 다음과 같다.

1. 저자는 저작권이 연구소에 속함을 주(註)로 표시하여야 한다.
2. 논문의 상품화를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. 다만 제4 항제1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20. 8. 28.]

제8조(간행 및 편집주관) 연구소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편집위원회 구성) ① 편집위원회는 본교 및 타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선임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이를 겸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③ 편집위원은 전공별,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 <개정 2015. 5. 14.>
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6.9.9.>

제10조(편집위원회의 기능)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5. 5. 14.>

1. 원고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
 2.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
 3. 기타 학술지 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논문 등의 심사, 그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, 그 업무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4.>

제11조(원고심사절차) ①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.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거나 국·영문초록,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, 혹은 학술지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.

- ② 접수된 원고는 제목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사에 회부하기로 된 원고에 대해 심사위원의 전공,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원고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원고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 다만, 외국어논문, 번역물, 평석 등을 기고하는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한다. <개정 2014. 12. 15., 2015. 5.

14., 2016. 1. 26., 2016. 9. 9.>

- ④ 원고심사는 심사위원이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⑤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 <신설 2015. 5. 14.>
- ⑥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액수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9. 9.>

제12조(심사기준)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.

1. 제6조제2항 각 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
2. 논문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
3. 논문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
4. 젠더법학 및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할 것
5. 그 밖에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

제13조(심사판정) ①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“게재가능”, “수정 후 게재”, “수정 후 재심사”,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하여, 심사평가서(번역물의 경우 별지 제1의2 서식)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 2014. 12. 15., 2015. 5. 14.>

- ②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[별표 1]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2. 26.>
- ③ ‘수정 후 게재’ 논문은 수정여부 확인 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한다. <개정 2017. 12. 26.>
- ④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받아 최초로 심사하였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3. 31.>
- ⑤ 최종결과 판정 및 게재순서,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2. 26.>

제14조(심사결과의 확정과 통보)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가서가 접수되면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4. 12. 15., 2015. 5. 14., 2016. 1. 26.>

-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15., 2015. 5. 14.>
- ③ 제2항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논문제출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.

제15조(원고편집)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·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.

② 게재될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며,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16조 (게재료 청구) ①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논문은 A4 2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A4용지 1면당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초과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9.9.]

1. [별표 1]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편집위원회 판정(제13조제2항, 제14조 제1항 관련)

계재 가능	수정 후 계재	수정 후 재심사	계재 불가	편집위원회 판정
3				계재 가능
2	1			"
	3			수정 후 계재
2		1		"
2			1	"
1	2			"
1	1	1		"
		3		수정 후 재심사
	2		1	"
	2	1		"
1		2		"
	1	2		"
1	1		1	"
1		1	1	"
			3	계재 불가
1			2	"
		2	1	"
	1		2	"
		1	2	"
	1	1	1	"